

초단시간노동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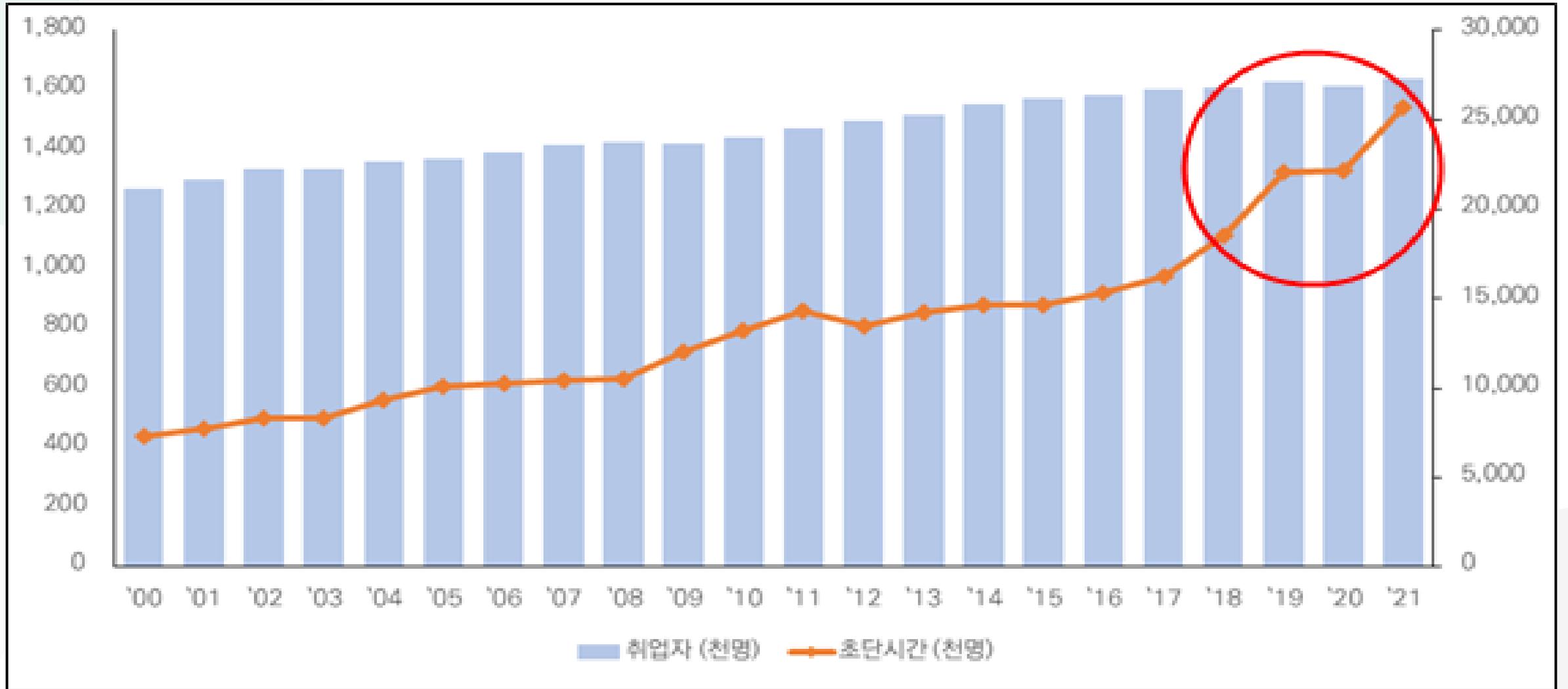
세계적 추세 속 한국의 문제

- ▶ 기술의 발전, 산업의 변화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
- ▶ 한국에서는 노동법 체계로 인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문제
- ▶ 단시간 노동자 : part-time / short-time
- ▶ 초단시간 노동자 : ultra-short-time (?)

초단시간노동자, 단시간노동자 증가 추세

| 시점 | 일시휴직자 | 1~14시간 | 15~35시간 | 36~52시간 | 53시간이상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2013.09 | 345 | 812 | 2,635 | 15,808 | 6,102 |
| 2014.09 | 341 | 816 | 2,719 | 16,237 | 6,100 |
| 2015.09 | 308 | 848 | 2,817 | 16,496 | 6,019 |
| 2016.09 | 354 | 874 | 2,937 | 17,006 | 5,526 |
| 2017.09 | 306 | 960 | 3,115 | 17,451 | 5,178 |
| 2018.09 | 309 | 1,106 | 3,409 | 17,930 | 4,302 |
| 2019.09 | 372 | 1,322 | 3,930 | 17,862 | 3,917 |
| 2020.09 | 789 | 1,261 | 4,332 | 17,269 | 3,361 |
| 2021.09 | 394 | 1,535 | 4,711 | 17,932 | 3,111 |
| 2022.09 | 457 | 1,796 | 13,794 | 10,271 | 2,071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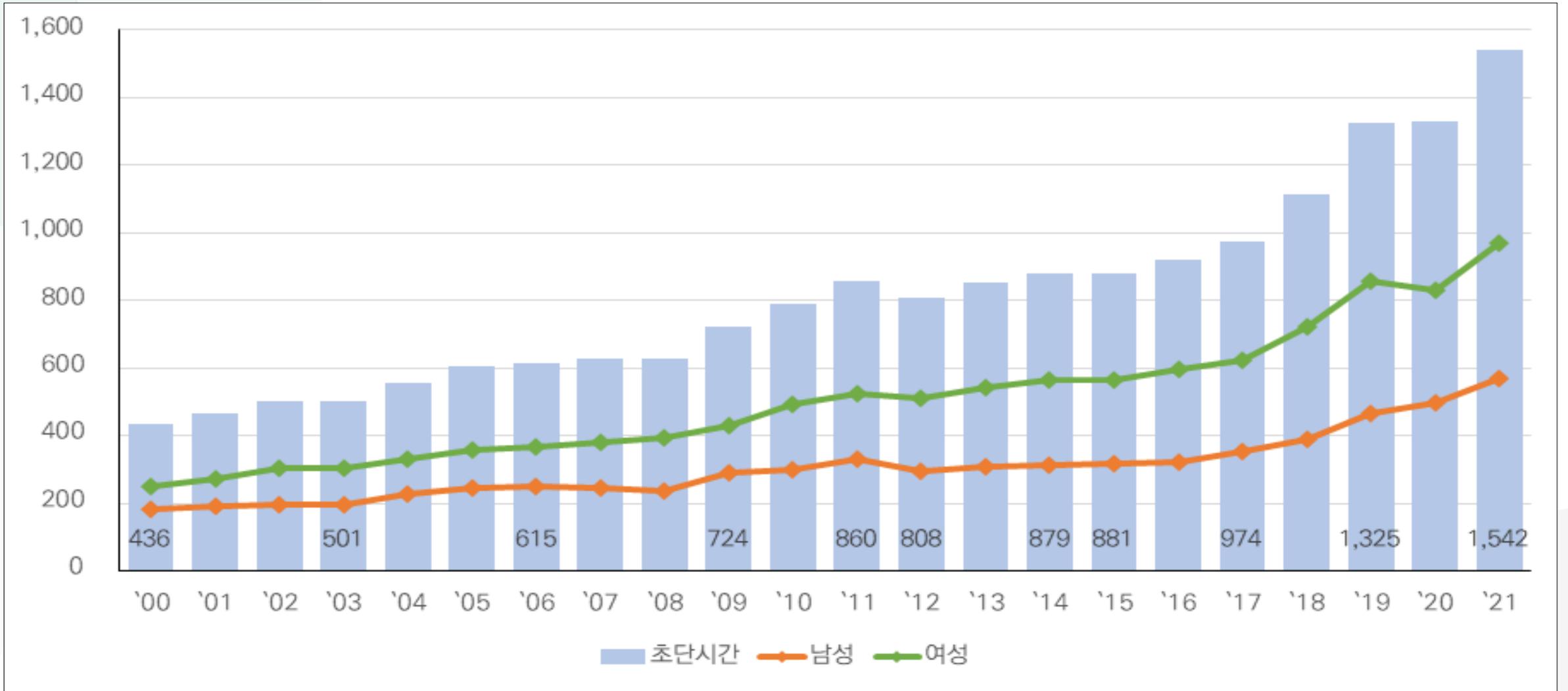
초단시간노동자, 단시간노동자 증가 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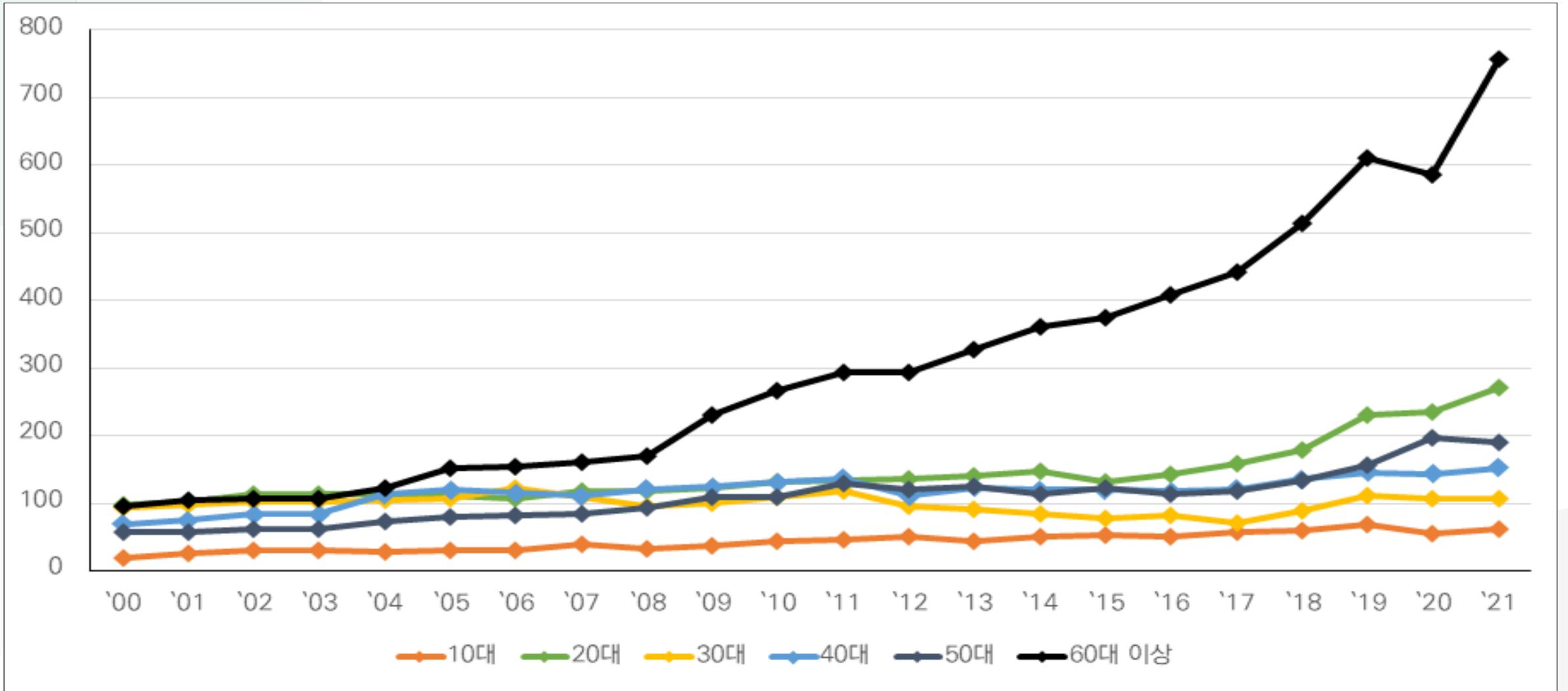
초단시간노동자, 단시간노동자 증가 추세

| 지역 | 초단시간 | 단시간 | 통상 | 장시간 | 계 |
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|
| 강남구 | 112 (54.4%) | 75 | 4 | 15 | 206 |
| 마포구 | 105 (67.7%) | 40 | 5 | 5 | 155 |
| 관악구 | 88 (63.3%) | 42 | 4 | 5 | 139 |
| 노원구 | 67 (70.5%) | 24 | 1 | 3 | 95 |
| 종로구 | 39 (52%) | 32 | 0 | 4 | 75 |
| 계 | 411 (61.3%) | 213 | 14 | 32 | 670 |

초단시간노동자, 단시간노동자 증가 추세



초단시간노동자, 단시간노동자 증가 추세



한국 노동법 체계의 문제

- ▶ 단시간노동자에 대해 통상노동자와 비교하여 '시간 비례의 원칙' 적용
- ▶ 초단시간노동자는 시간비례의 원칙 '적용제외'
 - 근로기준법 : 주휴일, 연차유급휴가 미적용
 - 퇴직급여보장법 : 퇴직금 미적용
 - 고용보험법 : 고용보험 일부 적용
 - 국민연금법 : 국민연금 미적용
 - 국민건강보험법 : 건강보험 미적용

단시간노동자와 초단시간노동자 사이의 차별

| 구분 | 현행 (시간 비례의 원칙 미적용) | 시간 비례의 원칙 적용 (주14시간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본급 | 584,511 | 584,511 |
| 주휴수당 | 미적용 | 116,902 |
| 연차휴가수당 | 미적용 | 24,691 |
| 퇴직금 | 미적용 | 48,709 |
| 구직급여 | 미적용 | 269,360 |
| 계 | 584,511 (55.9%) | 1,044,173 |

주15시간 기준의 합리적 근거 부재

▶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

휴일, 연차 유급휴가, 퇴직급여 등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.

▶ 위헌소원 소수의견

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액에 대한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심대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.

“차별”을 위한 초단시간노동자 개념 규정

- ▶ 해외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단시간 노동자를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념 규정
예) 프랑스, 독일, 영국, 일본
- ▶ 한국에서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해 ‘시간 비례의 원칙’ 적용하기 위해 개념 규정
- ▶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 주휴수당, 퇴직금을 비롯한 수당을 차별하기 위해 개념 규정

노동법 체계 개선 시도

- ▶ ‘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’ : 주휴수당, 연차유급휴가, 퇴직금, 고용보험 보장
- ▶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
- ▶ 궁극적으로는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‘초단시간노동자’ 개념 철폐
- ▶ ‘통상노동자/단시간노동자/초단시간노동자’ → ‘통상노동자/단시간노동자’

기본소득의 필요성

- ▶ EITC가 주요 복지인 현행 복지 체계에서 초단시간노동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
- ▶ 초단시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생계 목적의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
- ▶ 단기적으로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음
- ▶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의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